

2021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· 수행평가 관련 사전안내

◎ 2학기 1차고사 일정

- 1차고사 실시 : 10.5(화)~10.8(금)
- 성적 이의 신청 기간 : 10.12(화)~10.15(금)

◎ 지필평가 관련

- 평가 관련 교사 연수 실시, 선행학습 금지, 서답형 부분점수 채점기준 명료화, 이의신청 기간 운영.

◎ 수행평가 관련

-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, 수행평가 공정성과 형평성 고려하여 실시, 학생의 평가 부담 최소화 노력,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 준수, 수행평가 채점기준 명료화 및 일관성 유지, 태도 평가 지양.

◎ 코로나19 관련

-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발생 대비
 - 확진·격리·의심증상 학생 발생 상황별 처리 방안 마련
-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(산출식 포함) 사전 안내(필수)
 - 지필평가 시행 전 학생·학부모 안내(미안내 시 민원 발생 우려)

-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
-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
-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임

[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]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 증빙자료	인정비율 (권장)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입원치료통지서	100%
격리 통지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격리통지서	100%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<유의사항>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- 다만,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1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(PCR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, 2) 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/ 다만,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• 동거인의 격리통지서	100%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•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 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예 문자 통지 시본 등)	100%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증상 발현 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• 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인 경우' •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	100%

2021. 9. 29.

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장

